



교육부



53차 ADB 연차총회
9.4.2022

수신 수신처 참조
(경유)

제목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준수 및 파기 철저

1. 관련 :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-504(2020.6.11.)호
2.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과 위반 시 즉시 현장점검 예정임을 알려온 바, 각 부서(기관)에서는 동 사항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다 음 >

-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,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입 기록을 작성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< 출입기록 작성 사례 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흥주점,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·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종교행사 참석자 명부 작성 · 주민자치센터, 문화·체육시설 등의 출입자·이용자 명부 작성 등 	

- 이와 관련, 감염병 예방·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기록 작성의 필요성은 일응 인정되나,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 위험이나 오·남용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<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례 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방역대책으로 기대가 크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(중앙일보, 6.5) · PC방,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단을 방치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 (이데일리, 5.12) 	
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출입기록 등 개인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, ?개인정보 보호법? 제58조제4항에 따라 처리 목적(감염병 예방?추적)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만 보관하고 목적 달성 시에는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

하여야 합니다.

	< 출입기록 보관기간 적용 사례 >	
·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수집일로부터 4주간 보관 후 자동 파기 파쇄		

붙임 개인정보 파기 관계 법령 발췌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수신자 각실과 외 5

주무관 기안06/11 정보보호팀장 전결06/11
한지영 김도영

협조자

시행 교육정보화과-3413 (2020-06-11) 접수 20200611-32 (2020-06-11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505 팩스번호 044-203-6185 / han4u@korea.kr / 공개

□ 개인정보보호법

-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
- 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방법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1.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 2. 제1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: 파쇄 또는 소각
-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

- 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'복원이 불가능한 방법'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.

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

- 제13조(개인정보의 파기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완전파괴(소각·파쇄 등)
 2.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
 3.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
-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,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: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
 2. 제1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해당 부분을 마스킹, 천공 등으로 삭제